

4-7. 대손금의 손금산입



중소기업의 회수불능채권(대손금)을 조기에 손금 인정

지원 내용

-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
단, 부도발생일 이전의 외상매출금만 해당되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
-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을 대손금으로 손금 인정(2020년 신설)¹⁸⁷⁾
단,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제외
 - ☞ 채무자의 무재산 등 회수불능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대손금으로 인정받음

유의사항

-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유가 발생하고, 장부상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하여야 함(결산조정사항)
-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
-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

절차 및 제출서류

-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대손총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

관련 법령

- 「법인세법」 제19조의 2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19조의 2

187) 2020년 이전에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였다더라도 2020년 이후 비용을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

4-8. 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의 손금산입



중소기업에 대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하는 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의 인정금액 한도 우대

지원 내용

- 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 한도를 중소기업 외의 사업자보다 우대(3,600만원)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를 해당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
- 기업업무추진비(접대비) 한도(①+②)

구분	중소기업	중소기업외
①	3,600만원	1,200만원
②	수입금액	적 용 룰
	100억원 이하	0.3%
	100~500억원 이하	3천만원 + (100억초과)×0.2%
	500억원 초과	1억1천만원 + (500억초과)×0.03%

유의사항

- 최저한세 해당사항 없음
- 농어촌특별세 해당사항 없음

관련 법령

- 「법인세법」 제25조, 「소득세법」 제35조